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338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정부안)	4
2. 관세사회 명칭 변경 (정부안)	6
3.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정부안)	7
4.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정부안)	9
5. 관세사 명의 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 (정부안)	12
6.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 (정부안)	14
7. 조문정비 (김현정의원안, 정부안)	16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338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8. 29.
-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나.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라.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정부안)

현행	개정안
☐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2(5)) ☐ <추가>	☐ 직무범위 추가 ☐ (현행과 같음) ☐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대리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29. 제출 (의안번호 3387)

☐ 개정안은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리를 추가 규정하여 「관세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관세사의 직무에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¹⁾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은 관세사가 상기 사항 이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 동법에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³⁾

1)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18조(대리인)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3)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개정안은 이에 「관세사법」에도 관세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참고로, 「국세기본법」⁴⁾ 및 「세무사법」⁵⁾ 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위해 세무사 및 대리인 등을 선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관세사회 명칭 변경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회 명칭 변경 (§13의3등)	☐ 한국관세사회의 등록된 법인 명칭 법령에 반영 ○ <u>관세사회 → 한국관세사회</u>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봄. 이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관세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봄.

* 정부안 2024. 8. 29. 제출 (의안번호 3387)

☐ 개정안은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한국관세사회의 등록 법인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참고로, 타 전문자격사협회의 명칭 역시 전문자격사 앞 ‘한국’ 및 ‘대한’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

6)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3.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13의7)	☐ 탈세 상담 등 금지 ○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 금지 ☐ 위반시 제재 ○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29. 제출 (의안번호 3387)

☐ 개정안은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관세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관세사법」 제4장에서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사는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가 부여되며 금품 제공 및 명의대여 등이 금지됨.⁷⁾

개정안은 이에 더해 관세사의 의무 중 탈세 상담 금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를 담당하고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⁸⁾ 개인 납

7) 「관세사법」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세자의 관세 납부와 관련하여 최전선에서 직무를 수행중임. 그러나 관세사와 같이 납세성실이행의무가 있는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⁹⁾가 부여되고 있으나 「관세사법」에서는 탈세 상담과 관련된 별도의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발효로 관세사의 업무에서 상담 관련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적법한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있음.

8)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9)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는 공무원 겸임 금지 (§15 ①) ○ (예외)국회의원, 지방의원, 비상근 공무원, “공공기관” 위촉 업무 수행 가능 - <추 가>	☐ 겸임 금지 예외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업무
☐ 업무의 자문범위 (§21의3①) ○ 공공기관은 관세사 직무 관련사항에 대해 관세사회 업무 위촉 또는 자문 가능 ○ <추 가>	☐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또는 자문 가능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29. 제출 (의안번호 3387)

☐ 개정안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금지의 예외 업무로서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관세사가 공무원 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관세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¹⁰⁾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

10) 「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을 광의로 해석하여, 일부 관세사는 관세청 소관 위원회 위촉 및 관세사회에 요청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위촉·자문 업무를 수행중임.

다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증가 등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세관 인력은 한정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관세당국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음.¹¹⁾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업무에 대한 명시적인 겸임 금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사의 공익 활동 수행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개정안은 이에 관세사의 겸임 금지 예외 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관세사의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비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음.

참고로, 「세무사법」 또한 공무원 겸임 및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예외 업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¹²⁾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024년 관세청은 공익관세사를 활용하여 각 부처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분류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음.

12)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관세사 명의 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명의대여 등 금지 대상행위 (§30의2) ☐ ①대여 행위 ☐ ②빌리는 행위 ☐ ③명의대여 알선 행위 ☐ <신설>	☐ 금지의무 위반시 몰수·추징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몰수 및 추징 ☐ 금지의무(①~③)를 위반한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린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29. 제출 (의안번호 3387)

☐ 개정안은 관세사의 명의 대여 행위, 명의를 빌리는 행위, 명의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관세사의 명의대여 등 금지 의무¹³⁾를 규정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¹⁴⁾ 그러나 관세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전문자격사는 명의를 빌려준 자 및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 알선

13) 「관세사법」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4) 「관세사법」

제2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자를 대상으로 명의대여 등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¹⁵⁾

-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관세사에 대해서도 명의대여 금지의무¹⁶⁾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 3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득을 모두 몰수·추징하려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의를 빌려준 자, 명의를 빌린 자, 알선자에 대해 명의대여 관련 부당이득의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무사법」, 「감정평가사법」은 명의를 빌려 준 자, 명의를 빌린 자에 대해서 명의대여 관련 부당이득의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음.

16) 명의대여행위, 명의를 빌리는 행위, 명의 대여 알선 행위

6.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 (정부안)

현행	개정안
☐ 과태료 부과 (§31②)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세사 휴·폐업, 사무소 이전·폐지 시 세관장에 미신고 - 통관취급법인 등이 사무소당 1인 이상 관세사를 두지 않는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	☐ 부과기준 위임 근거 마련 ○ (현행과 같음)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29. 제출 (의안번호 3387)

☐ 개정안은 관세청 지침으로 운영 중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① 관세사 휴·폐업, 사무소 이전·폐지 시 세관장에 미신고한 경우 ② 통관취급법인 등이 사무소당 1인 이상 관세사를 두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벌의 한 종류인 행정질서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관세사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지침)’을 두어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금액을 설정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음.

7. 조문정비 (김현정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대차대조표” ☐ “직무보조자”	☐ “재무상태표”로 용어변경 ☐ “사무직원”으로 용어변경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관세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간주

* 김현정의원안 2024. 7. 17. 제출 (의안번호 1843), 정부안 2024. 8. 29. 제출 (의안번호 3387)

☐ 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직무보조자’는 ‘사무직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관세사법」 제17조의4 및 제17조의6¹⁷⁾에서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표를 뜻하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¹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로서 국민이 쉽게 그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¹⁹⁾,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미 ‘대

17) 「관세사법」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18) 기업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표

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용어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또한 현행 「관세사법」 제9조제5항²⁰⁾등은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어 통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13조의5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입을 위하여~’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어 통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보조자’ 및 ‘사무직원’로 혼용되어 조문 간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음. 한편, 기타 전문자격사법²¹⁾ 역시 전문자격사별 직무를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2건의 개정안은 동법의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사무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간 통일성을 제고하며, 기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취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58

19) 국회 법제실에서는 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해당 용어를 ‘재정상태표’로 순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법제실, 「법률별 용어 정비 안내문」, 2020. 9. 참조)

20) 「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21)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변리사법」, 「감정평가사법」